



보도	2026.6.25.(목) 조간	배포	2026.6.24.(수)		
담당부서	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	책임자	팀 장	송명준	(02-3145-8030)
		담당자	선 임	김슬기	(02-3145-8033)
	중소금융감독국 중소금융소비자보호팀	책임자	팀 장	김수진	(02-3145-6775)
		담당자	수 석	임효연	(02-3145-6797)
	자금세탁방지실 자금세탁방지기획팀	책임자	팀 장	박병일	(02-3145-7502)
		담당자	선 임	한상묵	(02-3145-7504)

은행·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.

- ① 자유적금계좌가 소비자의 자산증식에 기여하면서 사기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개설·해지 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.
- ②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사기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겠습니다.

I 추진 배경

- 온라인 물품거래가 확대되면서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사기거래 범죄가 발생하여
 - 금융감독원은 '24.4월 경찰청과 함께 소비자 경보(주의)를 발령* 하고 온라인 물품거래시 소비자 행동요령** 등을 안내하였으며,
 - *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!(2024 - 15호) ('24.4.1.)
 - ** 가급적 대면 거래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되,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할 때는 판매자 계좌의 적금계좌 여부를 확인하여 적금계좌인 경우 사기에 각별히 유의하고, 거래 전 「사이버 사기 예방수칙(경찰청)」을 숙지할 것을 권고
 -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, 은행권 공동 FDS*를 자유적금 계좌 관련 FDS를 도입하는 등 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.
 - *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(Fraud Detection System)

- 그간의 금융감독원, 금융권 등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적금 계좌는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계좌 개설이 가능*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사례**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,

* 수시입출식 계좌는 원칙적으로 20영업일 내 소금융권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한 반면, 자유적금 계좌는 계좌 개설에 별도 제한이 없음

** 주로 ①비대면으로 ②단기간에 다수의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하여 ③불특정 다수로부터 ④입금을 받은 후 ⑤계좌를 중도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

- 은행*·중소금융권** 공통으로 자유적금계좌의 개설 및 해지 관련 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, AML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
* 자유적금계좌 관련 범죄 발생 이후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개설·해지 요건, 납입 계좌 제한 등으로 대응 중

**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(농협·수협·산림·신협 조합)

[참고] 자유적금계좌를 통한 범죄 사례

- 사기범 A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비대면으로 3일간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하여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 2천만원 상당을 편취
- 사기범 B는 온라인 중고거래 관련 사기 범죄를 위해 비대면으로 2일간 자유적금 계좌 13개를 개설하여 피해자 80명으로부터 7천만원 상당을 편취

※ 주요 사기 물품은 티켓(콘서트, 프로야구 등), 전자기기 등이며, 특정 지역 대상으로 범죄 발생

II 대응방안

1 자유적금계좌 개설·해지 관련

- 소비자의 자산 증식 기회를 보장하면서 자유적금계좌가 사기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
-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는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 (중도해지 계좌 포함)토록 하며, 추가로 자유적금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- 또한, 자유적금계좌로 편취한 범죄 수익금의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적금계좌 개설 이후 **3영업일 이내*** 해지하는 경우 **영업점 방문**을 통해서만 **해지가 가능**토록 절차를 변경하겠습니다.

* 사기범은 피해신고 접수 전에 비대면으로 자유적금계좌를 중도 해지하여 현금 인출 시도

- 범죄악용 가능성이 낮은 **①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***인 상품, **②자유적금 개설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****한 상품은 **자유롭게 개설·해지**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
* 재테크 관련 인기가 높은 **하이율의 적금 상품**은 대부분 월 **30~50만원** 납입 가능하며, **1인 1계좌만 가입 가능**

** 인터넷은행은 월 납입한도 100만원 초과 자유적금의 입금을 은행 내 본인 계좌로 제한중

※ 은행권 자유적금계좌의 87.2%, 중소기업권 자유적금계좌의 85.3%(25.1~26.1월 기준)는 월 납입 한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, 금융회사 내 본인계좌에서만 납입이 가능하여 현재와 같이 이용 가능

2 AML 대응 강화

- **은행권 및 중소기업권(저축은행)**에 사기피해 정보의 적극적 입수 및 **FDS 연계** 등을 통해 자유적금계좌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등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**강화된 고객확인 업무(EDD)**를 **철저히 이행**하고,
-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**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 검토 실시** 및 **금융정보분석원(FIU)**에 **의심거래 적극적 보고**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하겠습니다.

III 향후 계획

- **은행·중소금융권**은 자유적금계좌의 **개설·해지**와 관련하여 업무절차, 전산요건 변경 등을 통해 **3분기 중** 동 방안을 **시행**할 예정입니다.
- **금융감독원**은 자유적금계좌 관련 **자금세탁 우려 사례**를 **전파**하고, **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**을 **안내**할 예정입니다.
- **금융감독원**은 앞으로도 금융 관련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